

한국어교육원운영규정

제 정 2007. 9.

개 정 2018. 7.

개 정 2019. 6.

개 정 2021. 7.

제1조 (명칭) 본 교육원은 우송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(이하 “본 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 (설립목적) 본 교육원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로 유학 온 외국유학생 및 국내·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주요사업) 본 교육원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본 대학 외국유학생, 연수생, 다문화가족, 해외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
2. 외국 교류대학 한국어 교수 파견 및 한국어 교육
3.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및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
4. 한국어 교육 교재 및 기타 출판물 간행
5.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개설 및 강사 연수
6.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
7. 한국 문화 체험 학습, 역사 탐방 프로그램의 개발
8. 기타 본 교육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

제4조 (조직) ①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,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및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1.07.29.)

②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본 교육원은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빙교수급 이상의 상근 교원을 두고, 교육과 연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④본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강사의 임용 등) ①강사는 원장이 임명하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및 한국어교사 자격취득자 등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강사 및 보조인력 등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재정)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교비지원금,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7조 (교육 및 연구 장려) 본 교육원은 필요 시 우수 강사를 선정하여 우수 강사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 (기타) 본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18.07.02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